

학술지 운영 규정

2024. 4. 17 제정
2024. 9. 19 개정
2025. 12. 15 개정
2026. 4. 1 개정

〈연구2실〉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관세무역개발원(이하 “개발원”이라 한다)에서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이하 “학술지”라 한다)의 발간 업무를 담당할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논문의 심사, 편집, 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편집위원회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을 포함해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관세·무역·통상 분야에서 연구업적이 탁월하고 대외활동이 활발한 자 중에서 개발원 회장이 위촉하며, 편집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으로 개발원 회장이 위촉한다.

1. 국내·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인 자
2. 최근 5년 이내의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학술저서)이 5편 이상인 자
3. 총 연구실적(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논문,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학술저서)이 10편 이상인 자
4.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 학술지 편집위원으로 재직한 자

③ 편집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보장되어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좌할 부편집위원장과 간사를 지명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심사논문의 판정 및 논문 게재 여부 결정
2. 학술지 편집 방향 결정
3. 기타 학술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편집의 원칙)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 완료된 논문을 심사위원으로부터 접수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논문의 게재 여부를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심사 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③ 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투고요령에 합당하게 논문이 투고 및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 사항을 검토한다.

④ 타 학술지에 게재하였거나 게재가 예정된 논문은 본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⑤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 이상의 논문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편만을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의 2(편집위원의 투고 제한 등) ① 편집위원장 또는 부편집위원장은 임기 중 단독 또는 공동으로 논문을 투고할 수 없다.

② 편집위원이 투고한 논문은 심사위원 선정 과정에서 이해충돌을 철저히 배제하여야 하며, 본 조항과 관련한 직무 대행 등의 사안 발생 시 의사결정 내용을 편집위원회 회의록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 3 장 논문심사

제5조(심사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투고된 논문의 심사를 위해 논문 별로 해당 학문 분야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1. 국내외 대학의 조교수 이상 교수직에 있는 자
2. 박사학위 소지자

3. 석사학위를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의 연구 경력을 보유한 자
4. 심사대상 논문과 관련해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자

제6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① 편집위원장은 위촉된 심사위원에게 게재 신청된 논문의 심사를 의뢰한다.

- ② 논문의 심사는 비밀심사방법(심사위원에게는 게재신청자의 이름과 소속을 비밀로 하고 게재신청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에 의한다.
-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게재신청자의 신원을 파악할 수 없도록 저자명을 삭제하고, 게재신청자를 유추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 ④ 위촉된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료지급기준(별표1)에 따른 심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심사기준) ① 심사 항목은 연구 분야 적합성(20점), 연구 내용의 독창성(20점),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10점),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20점), 자료 및 문헌 활용도(10점), 기타 위원회에 특별히 전달할 사항 및 첨부자료(배점 없음) 등 총 10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2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로 채점한다.

- ② 심사위원은 심사 결과를 A(90~100점, 수정없이 게재), B(80~89점, 수정 후 게재), C(70~79점, 수정 후 재심사), D(70점 미만,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며 그 결과를 논문심사평가서(1심)(별지1)에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 ③ 심사위원은 심사용 논문 접수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논문심사평가서에 구체적으로 명기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이 심사위촉을 받은 날로부터 지정기간 내 심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은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원 심사위원은 심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 ⑤ 위원회는 심사위원이 통보한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다음 판정표에 따라 결정한다.

심사위원1	심사위원2	심사결과
A	A	수정없이 게재
A	B	수정 후 게재
B	B	
A	C	수정 후 재심사
B	C	
C	C	
A	D	
B	D	
C	D	게재불가
D	D	

⑥ 편집위원장은 제5항의 결정사항을 논문투고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되, "수정 후 게재"의 경우에는 수정할 사항을 함께 통보한다.

⑦ 1차 논문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1차 심사결과와 심사의견을 통보하고, 수정논문을 제출하도록 안내한다. 논문투고자가 수정요구를 받은 후 사유를 통보하지 않고 위원회에서 제시한 기간 내에 수정 논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의 투고를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⑧ 편집위원장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제7항에 따라 수정·보완된 내용을 검토하여 최종 논문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⑨ 1차 논문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사"에 해당되는 논문의 경우 제7항에 따라 수정 논문을 제출받아 1심의 심사위원 2명이 심사평가서(2심)(별지2)를 토대로 재심사를 진행하며, 재심 평가(게재 가능, 게재 불가) 결과 두 심사위원 모두가 "게재 가능"으로 평가한 때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심사결과통보) ① 심사결과는 논문 또는 수정논문을 접수받은 날(또는 원고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논문투고자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만일 1개월 이내에 심사결과의 송부가 불가능한 경우 논문투고자에게 그 사유와

심사결과 통보 예정일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게재 불가 결정을 받은 논문투고자는 결정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편집위원장에게 이의제기신청서(별지7)를 제출함으로써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편집위원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 인용 또는 기각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따라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제3자를 심사위원으로 지정하여 재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논문투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학술지 게재) ① 게재 가능으로 판정된 논문의 투고자는 학술지의 논문 작성방법에 따라 논문을 편집하여 제출한다.

② 편집이 완성된 논문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발행되는 권호에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게재가 확정되면 논문투고자에게 연구지원비 지급 기준(별표2)에 따른 연구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주저자와 공동 저자를 불문하고, 동일 필자는 최근 1년 이내에 1편을 초과하여 게재할 수 없다. 다만, 논문 발간의 시의성, 특집호 구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의결로 예외적으로 게재할 수 있다.

제 4 장 논문편집 및 발간

제10조(발간일정) 학술지는 연 4회(매년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특별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논문투고) ① 논문의 작성·투고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요령으로 정한다.

②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원하는 연구자는 논문투고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논문 원고를 논문투고 신청서(별지3)와 함께 투고해야 한다.

제12조(편집통보) ①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해 해당 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②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13조(표절논문과 중복게재논문에 대한 게재) 학술지에 게재신청 혹은 게재

된 논문이 윤리위원회에서 표절로 판명되거나,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다시 게재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한다.

1. 아직 배포되지 않은 경우에는 미 배포된 학술지에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2. 이미 배포된 경우에는 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된 해당 논문을 삭제한 후 배포
3. 해당 논문의 표절사실이나 중복게재의 내용을 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지
4. 해당 논문의 투고자에게는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이 판명된 때로부터 3년간 학술지에 투고를 금지
5. 필요한 경우 논문의 표절이나 중복게재 사실을 관련 기관에 통보

제14조(논문의 저작권 이양) ① 논문의 저작권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개발원이 갖는다.

②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의 저작권 행사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개발원에 양도하며, 만일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해당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③ 논문의 저자(들)는 논문게재 확정시 논문게재요청서 및 저작권이양 동의서(별지4)를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논문게재증명) 투고논문이 게재 확정된 경우에는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별지5), 그리고 학술지 발간 이후에는 논문게재 증명서(별지6)를 논문투고자의 요청에 의해 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4년 0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4년 9월 19일부로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5년 12월 15일부로 소급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회장의 결재를 득하여 2026년 4월 1일부로 시행한다.

(별표 1) 제6조(심사의뢰 및 심사료지급) 관련

심사료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급액 (원)
심사위원	논문 1편당 50,000원

(별표 2) 제9조(학술지 게재) 관련

연구지원비 지급기준

지급 대상	지급액 (원)
논문투고자	논문 1편당 2,000,000원

※ 연구지원비 지급은 학술지 게재가 확정된 논문에 한함.

※ 타 기관에서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 공모전 수상작 및 학위논문 등 사사 표기 대상 논문의 경우 지급액의 50%를 감액 지급한다.

(별지 1) 제7조(심사기준) 관련

『관세무역연구』 논문심사평가서 (1심)

논문제목	(국문)	
	(영문)	
심사위원	성명:	전화번호:
	소속:	E-mail:
	주소:	
	계좌번호:	

1.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구분					평가 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연구 분야 적합성(20점)	12	14	16	18	20	
연구 내용의 독창성(20점)	12	14	16	18	20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12	14	16	18	20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10점)	6	7	8	9	10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20점)	12	14	16	18	20	
자료 및 문헌 활용도(10점)	6	7	8	9	10	
총점(100점)						

2. 최종 판정 (평가종료 후 판정란에 ✓표시)

판정 내용	판정	비고
A (90~100점, 수정없이 게재)		현재 상태로 학술지에 게재 가능
B (80~89점 수정 후 게재)		지적사항 수정 후 게재 가능
C (70~79점, 수정 후 재심사)		지적사항 수정 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
D (70점 미만, 게재불가)		현재의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3. 심사위원 총평

4. 심사위원 의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 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근거와 수정 제의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종 판정에서 ‘계재 불가’를 주신 경우에는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자는 학술지 『관세무역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심사위원 (인)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2) 제7조(심사기준) 관련

『관세무역연구』 논문심사평가서 (2심)

논문제목	(국문)	
	(영문)	
심사위원	성명:	전화번호:
	소속:	E-mail:
	주소:	
	계좌번호:	

1. 평가지표

평가 항목	평가 구분					평가 점수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연구 분야 적합성(20점)	12	14	16	18	20	
연구 내용의 독창성(20점)	12	14	16	18	20	
논리전개와 논문체계(20점)	12	14	16	18	20	
연구분석방법의 타당성(10점)	6	7	8	9	10	
학술적 가치와 연구성과의 기여도(20점)	12	14	16	18	20	
자료 및 문헌 활용도(10점)	6	7	8	9	10	
총점(100점)						

2. 최종 판정 (평가종료 후 판정란에 ✓표시)

판정 내용	판정	비고
게재 가능 (80점 이상)		현재 상태로 학술지에 게재 가능
게재 불가 (80점 미만)		현재의 연구내용으로는 게재 불가

3. 심사위원 총평

4. 심사위원 의견 (수정/보완 요구사항)

※ 위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근거를 가급적 상세하게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종 판정에서 '게재 불가'를 주신 경우에는 평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심사자는 학술지 『관세무역연구』의 연구윤리규정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심사위원 (인)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3) 제11조(논문투고) 관련

『관세무역연구』 논문투고 신청서

논문제목	(국문)				
	(영문)				
주제어(키워드)					
논문분야	분야		해당 분야에 ✓ 표시		
	1. 관세행정 및 제도 관련 연구 분야				
	2. 무역 관련 이론·정책 등 연구 분야				
교신저자	성명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자택			
		휴대폰			
E-mail					
제1저자	성명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자택			
		휴대폰			
E-mail					
공동저자	성명	한글			
		영문			
	소속			직위	
	연락처	자택			
		휴대폰			
E-mail					
우편물 수령주소	주소				
	성명				
	연락처				
원고매수			제출일자		

본인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관세무역연구』에 위
논문을 투고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투고인 (인)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별지 4) 제14조(논문의 저작권 이양) 관련

『관세무역연구』 논문게재 요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 귀중

논문제목 (Title of the Manuscript)

국문 :

영문 :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에 게재되기를 희망하며 아래의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하여 동의하는 바입니다.

1. 저자(들)는 본 논문이 창의적이며 다른 논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합니다.
2. 저자(들)는 본 논문에 실제적이고 지적인 공헌을 하였으며 논문의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함께 합니다.
3. 본 논문은 과거에 출판된 적이 없으며, 현재 다른 학술지 및 기관지에 게재를 목적으로 제출되었거나 제출할 계획이 없습니다.
4. 본 학술지의 발행인은 저자(들)나 본 학술지 발행인의 허락 없이 타인에 의해 이루어지는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습니다.
5. 저자(들)는 본 논문이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에 게재될 경우, 본 논문에 따른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모든 권한 행사 등을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 이양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저자	이름	소속 및 직함	생년월일	연락처	서명

(별지 5) 제15조(논문게재증명) 관련

논문게재 예정 증명서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	
논문 제목	(국문)
	(영문)
게재예정 권(호)	『관세무역연구』 제00권 제00호
학술지 발간(예정)일자	2000년 00월 00일

상기인의 논문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 제00권 제00호에 게재 예정임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별지 6) 제15조(논문게재증명) 관련

논문게재 증명서

저자명	
소속	
직위	
연락처	
논문 제목	(국문)
	(영문)
게재 권(호)	『관세무역연구』 제00권 제00호
학술지 발간일자	2000년 00월 00일

상기인의 논문은 (사)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간하는 『관세무역연구』 제00권 제00호에 게재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0년 00월 00일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별지 7) 제8조(심사결과통보) 관련

이의신청서

※투고일자			
신청자명		소 속	
연 락 처		e-mail	
이의신청 논문제목			
〈이의제기 내용〉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관세무역연구』에 투고한 논문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하며 아래와 같은 이의신청 절차에 동의합니다. 1.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투고자는 판정결과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 저자는 이의신청서 및 해당 논문(마지막 심사를 받은 상태로 제출)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편집위원회 회의를 통해 재심사 여부 결정을 내린 후 심사위원들에게 투고자의 이의신청 사실을 알리고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이의신청 심사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의신청 심사의 판정은 기존 심사절차와 동일하게 하며, 「게재 가능」의 판정이 나오더라도 시기 및 상황에 따라 논문의 게재는 다음 호로 연기될 수 있다. 이의신청일 년 월 일 이의신청자 관세무역연구 편집위원장 귀하			